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 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 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익금 산입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②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3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하며(「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
- 감가상각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금년 신소재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프로젝트를 위해 바쁘게 일했던 나사장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망각하였고, 이를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나사장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미제출과 관련하여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나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합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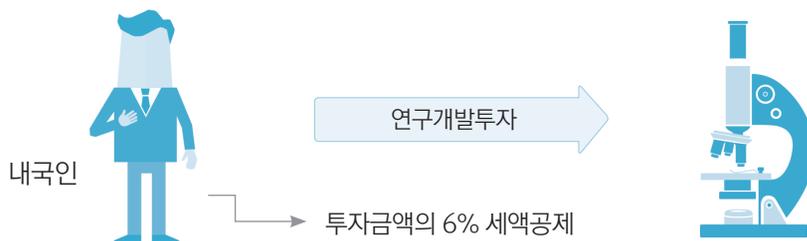
4) 대법원 2003두773, 2004.11.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 신기술기업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6-3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 신기술의 기업화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위한 시설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아래의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아래의 자산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6%(중견기업**은 3%, 일반기업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연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연도마다 적용 가능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예규 및 판례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⁵⁾

5) 사전법령해석법인2015-443, 2015.12.17.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07년 1월 1일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2017년 50,000,000원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세액공제 없이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었고, 나사장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알고 싶었습니다.

나사장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액과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세무사 답변

“나사장님은 3백만원이 세액공제되어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은 7천7백만원입니다.”

- ① 2017년 산출세액 : 80,000,000
- ② 2017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50,000,000 \times 6\% = 3,000,000$
- ③ 2017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3,000,000 = 77,000,000$

예규 및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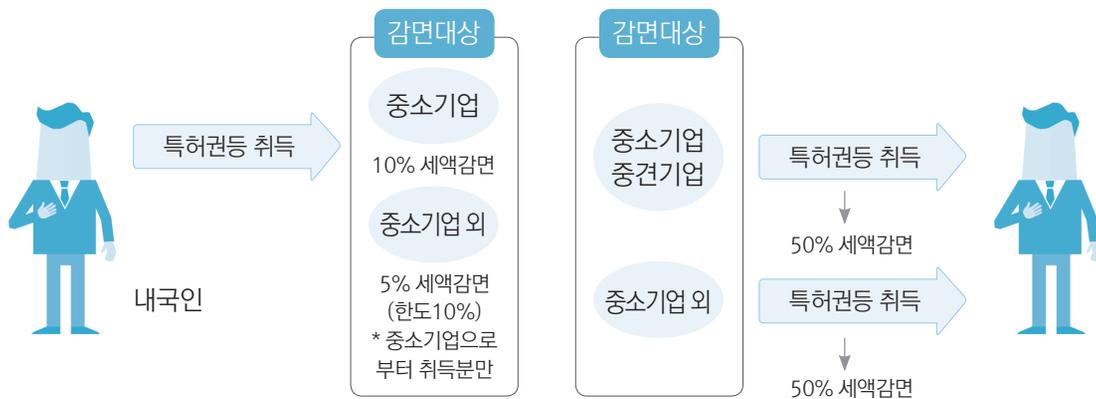
중소기업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연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연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6-4

특허권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 (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일정한 기술이란?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감면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중소, 중견기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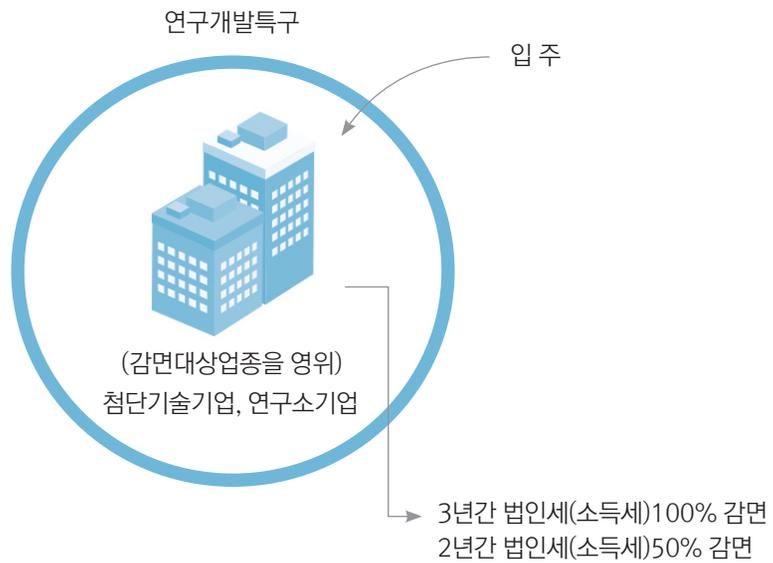
중소기업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 대여 :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이란?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감면한도

1. 서비스업

-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Min(①,②)
 - ① ㉠와 ㉡를 합한 금액
 - ㉠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50%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 Min(㉢,㉣)
 -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20%
 - ② Min(㉤,㉥)
 -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 ㉥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2. 서비스업 이외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②
 -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50%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 ②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Min(㉦,㉧)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20%

사후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예규 및 판례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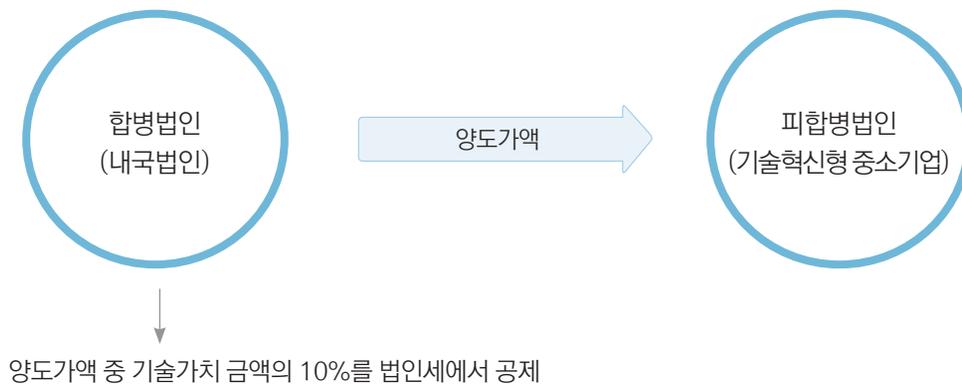
6) 법규법인2011-13, 2011.01.1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6-6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미만일 것(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④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기술가치 금액이란?(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 제외

☞ 이자상당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에 따른 세액의 차액 × 기간 × 0.03%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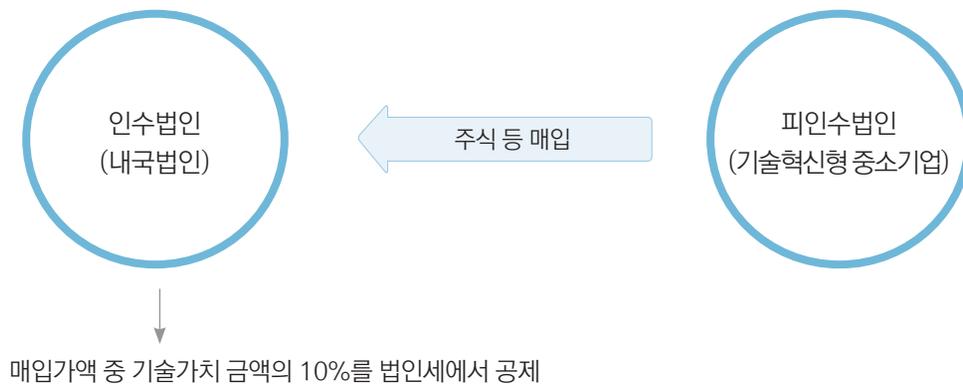
6) 법규법인2011-13, 2011.01.1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6-7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 ②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text{매입가액} \geq (\text{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times 1.3) \times \text{지분비율}$$

- ④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50% 미만인 경우로써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 내용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 또는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자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4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국법인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디지털카메라 제조회사인 A중소기업의 카메라 순간포착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A중소기업의 주식 중 60%를 취득하였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나사장은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주식의 10%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후 나사장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생각났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나사장님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분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 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⁷⁾

7) 조세특례제한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

6-8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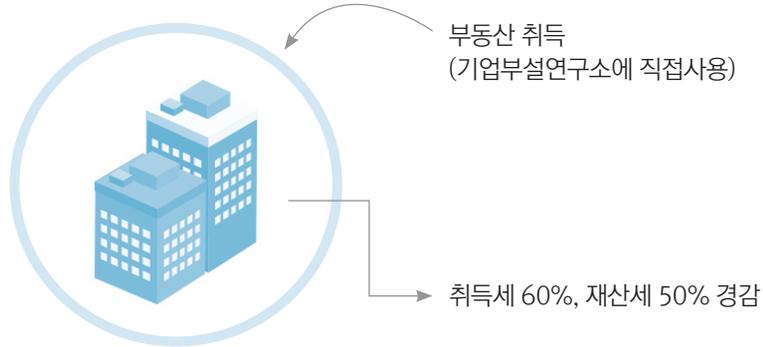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6-9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 1.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 7 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7-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155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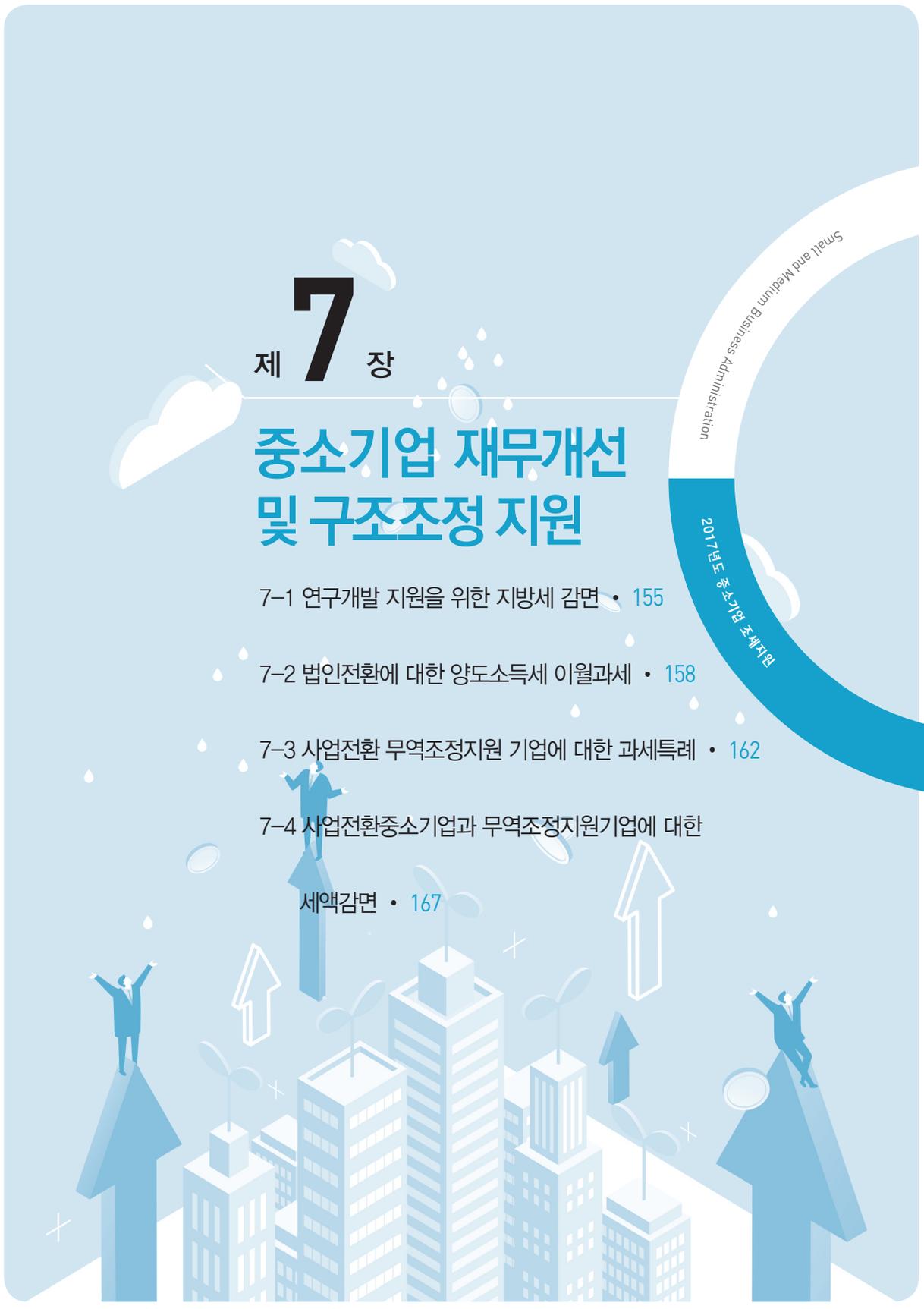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62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6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7-1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소멸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포괄승계

통합법인

지원내용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세액 승계
 통합법인의 취득세 면제

지원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통합
-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
 -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¹⁾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면제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정
 -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²⁾
 -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³⁾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2)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3)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 포함

용어해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등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기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질문과 답변

질문 임대업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 후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⁴⁾

4) 대법2014두37931,(2014.10.1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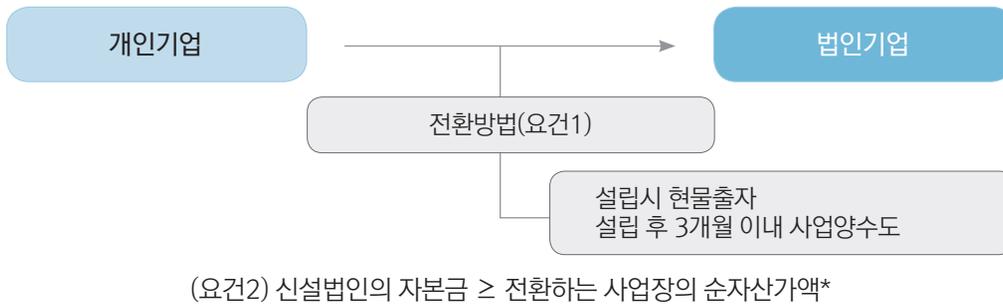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7-2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세 제 지원

-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 : 이월과세
-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세액의 승계
- 취득세의 면제

* 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⁵⁾의 합계액에서 사업관련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⁶⁾

5)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기준법령해석재산2016-15(2016.05.04.)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같은조 제2항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면제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징
 - ①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⁷⁾
 -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⁸⁾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수용이나 법령에 따른 사업의 폐지 및 재산 처분은 제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8)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 포함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나사장은 매출 및 이익의 상승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던 차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던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할 때가 아닌 법인에서 양도할 때 납부할 수가 있고,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공장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매진하던 중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니 추가세액과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라는 경정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다급한 마음에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그 납세의무자도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양도시점에 납부가 가능하나 취득가액을 잘 못 산정한 부분은 나사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⁹⁾

나사장은 법인으로 전환 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시기에 생각치 못한 양도소득세 추가 경정 고지로 고민이 깊었으나 가산세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세무사의 답변을 듣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조심2015서4134(2015.12.04.)



질문과 답변

질문 1 >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¹⁰⁾

질문 2 >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세무사 답변 >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¹¹⁾

10) 조심2015지536 (2015.05.27)

11) 광주지법2015구합12052(2015.11.26.)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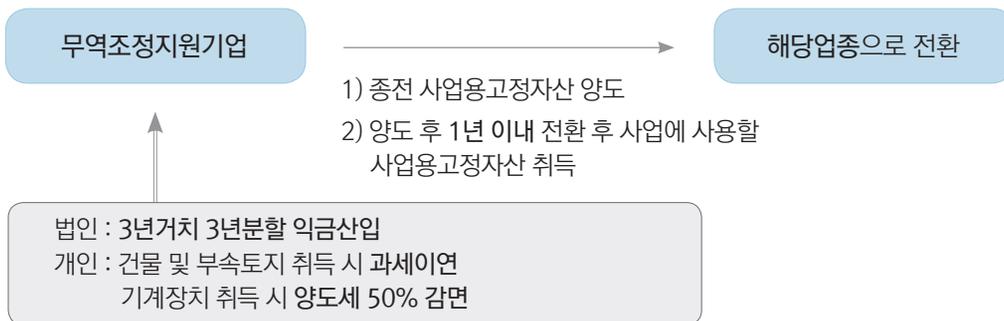
무역조정지원기업

7-3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광업		광업	B	1,000억원 이하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제조업	C14	
②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500억원 이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②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㉑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㉒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㉓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가구 제조업	C32	15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③건설업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④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⑤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⑥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⑦방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⑧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⑨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⑩정보서비스업	뉴스제공업은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⑪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⑫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⑬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⑭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⑮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⑯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⑰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⑱물류산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⑲직업기술학원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⑳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일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㉑노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㉒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㉓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㉔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㉕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㉖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㉗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㉘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과세이연금액 =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 ÷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text{세액감면액} = (\text{전환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text{전환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div \text{전환전사업양도가액}) \times 50\%$$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text{과세이연금액} = \text{양도차익} \times (\text{전환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 \div \text{전환전사업양도가액})$$

유의 사항

-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1일 0.03%)을 가산하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
-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용어 해설

- 과세이연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7-4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1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요건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의 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 전 사업의 양도·폐업한 날로부터 1년(공장신설은 3년) 이내에 전환
 - 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기준총매출액 50%이하) 전환 후 사업을 추가¹³⁾

해당 업종

- 7-3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업종 참조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포함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 포함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12)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3)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전환 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사업 추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기준총매출액)의 50%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총매출액의 50%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유의 사항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 0.03%)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

-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 전환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 2



질문과 답변

질문 대전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던 나사장은 건설업의 불황으로 이를 폐업하고 2017년부터 제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조업의 성공으로 2017년 10억원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계상되었고 다른 공제나 감면 내역이 없다면 나사장이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으로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는 얼마일까요?

세무사 답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업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능한 법인세액은 9천만원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2억원 × 10%) + (2억초과분 × 20%) = 1억8천만원

감면세액 = 1억8천만원 × 50% = 9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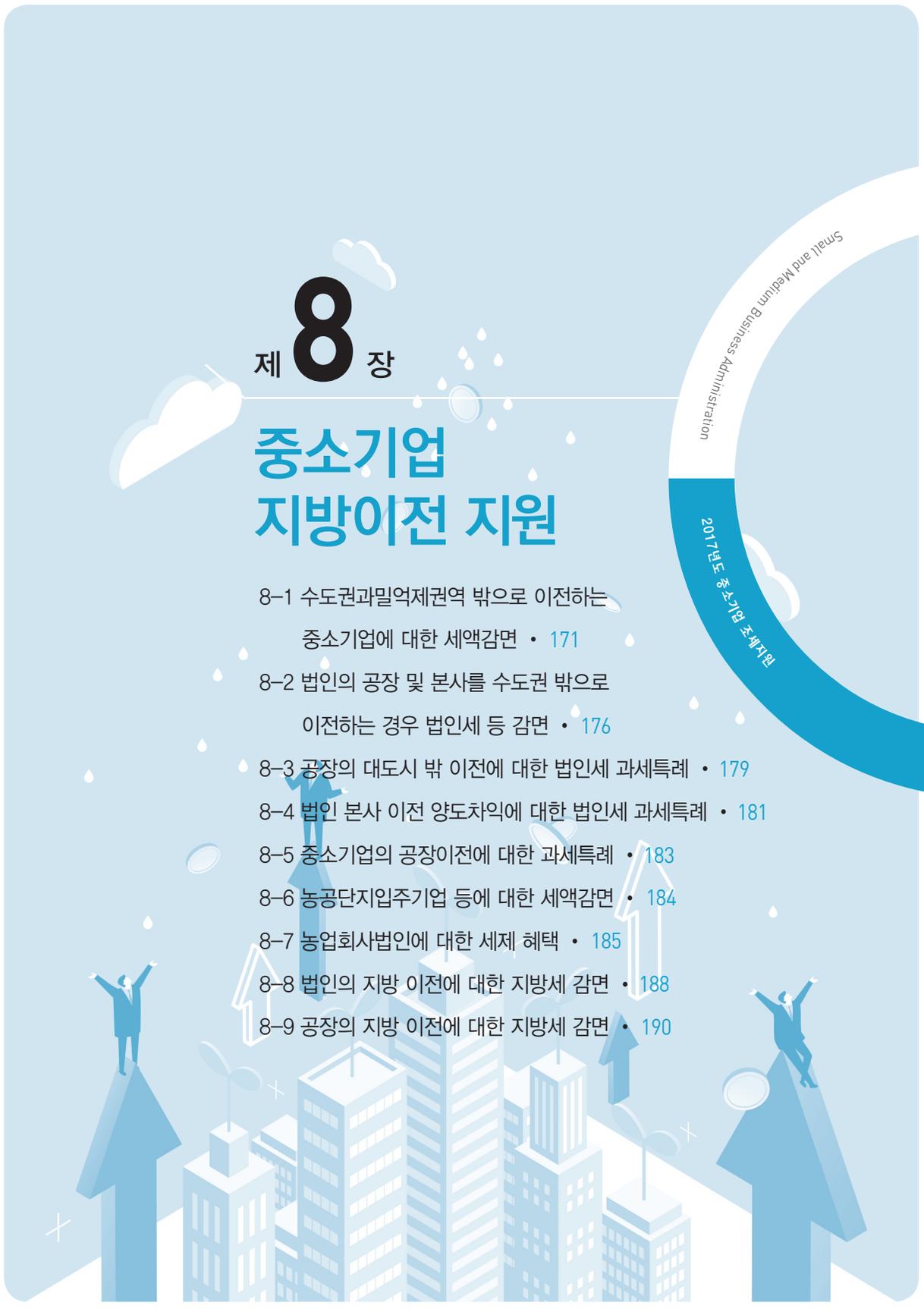
제 8 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71
- 8-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176
-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79
-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81
-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3
-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84
-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185
-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88
-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9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 ② 기존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¹⁾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유의 사항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시행규칙 제22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서울 문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주 거래처의 지방이전으로 경상북도 영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전부 이전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에 담당 세무사에게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절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제조업) : 2005.1.1
- ② 서울 공장 양도일 : 2016.12.31
- ③ 경북 영주로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17.1.1
- ④ 2017년 과세표준 : 1,000,000,000
- ⑤ 2017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이전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받게되는 감면세액은 법인세액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2017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17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 $180,000,000 \times 100\% = 180,000,000$
- ③ 2017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180,000,000 = 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2백만원) 중 전액 3천2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답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사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1천820만원과 가산세까지 2천300만원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4호(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²⁾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³⁾

세무사 답변)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33, 2000.3.31.

3) 법인-89, 2014.03.0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14.03.14 개정)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2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내용						
구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10 수도권 밖 이전공장 ·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100%	32,000,000	13,800,000	13,800,0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2015.03.13 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⑥ 업태·종목 제조업/금속제련					
구공장	⑦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⑩ 생년월일 ***/**/**		⑪ 업태·종목 제조업/금속제련		⑫ 조업개시일 1996년 1월 1일
공장이전	⑬ 구공장 이전일 2016년 12월 31일		⑭ 구공장 폐쇄(양도)일 2016년 12월 31일		
	⑮ 신공장 착공일		⑯ 신공장 사업개시일 2017년 1월 1일		
감면세액계산내용					
17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산내용	18 감면대상소득금액		260,000,000		
	19 감면비율		100%		
	20 감면대상세액		32,000,000원		
	21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18,200,000원		
	22 감면세액		13,800,000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이전법인

8-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 공공기관”은 예외)
 - ① 수도권 밖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원 내용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 공장 등 이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본사 이진후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질문과 답변

질문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요?⁴⁾

세무사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질문 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⁵⁾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법규법인 2013-487, 2014.01.20

5)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192, 2011.12.26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8-3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 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유의 사항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8-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④ 구리시 | |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 |
| ③ 의정부시 | 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
| ⑥ 하남시 | ⑦ 고양시 | ⑧ 수원시 |
| ⑨ 성남시 | ⑩ 안양시 | ⑪ 부천시 |
| ⑫ 광명시 | ⑬ 과천시 | ⑭ 의왕시 |
| ⑮ 군포시 |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